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항만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28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 분야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5급 1명, 5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7급 3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평형수 조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7급 2명)을 각각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인력 31명(6급 3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된 것에 맞추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수산물 방사능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했던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운영직군 1명(7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해양수산부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제7조제12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제16호 중 “해양환경관리업”을 “해양폐기물관리업(폐기물해양배출업 제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제11호를 삭제한다.

17.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련 업무

제15조제3항제7호 중 “해양조사협회”를 “한국해양조사협회”로 한다.

제44조의3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으로, “조직”을 “조직 및 정원”으로 한다.

제46조제16항부터 제1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 및 양산시와 창원시 중 부산항에 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다만, 제22조제8항제25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	--

별표5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 및 양산시와 창원시 중 부산항은 제외한다).
-----------	---------------------------------------

--	--

별표5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구례군·곡성군 및 장흥군은 제외한다).
-----------	---

별표5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

별표5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장항항 및 평택·당진항은 제외한다). 다만, 제22조제8항제25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	--

별표 16 중 총계 “601”을 “603”으로 하고, 일반직 계 “597”을 “599”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56”을 “57”로,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96”을 “197”로 한다.

별표 17 중 총계 “607”을 “609”로 하고, 일반직 계 “603”을 “605”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56”을 “57”

로,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207”을 “208”로 한다.

별표 18 중 총계 “321”을 “324”로 하고, 일반직 계 “321”을 “324”로 하며,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84”를 “87”로 한다.

별표 18의2 중 총계 “321”을 “324”로 하고, 일반직 계 “321”을 “324”로,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83”을 “86”으로 한다.

별표 24 중 총계 “1,285”를 “1,287”로 하고, 일반직 계 “1,285”를 “1,287”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43”을 “346”으로, 선박기관운영주사보 “1”을 “0”으로 한다.

별표 25 중 총계 “1,289”를 “1,291”로 하고, 일반직 계 “1,289”를 “1,291”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58”을 “361”로, 선박기관운영주사보 “1”을 “0”으로 한다.

별표 27 중 총계 “627”을 “628”로 하고, 일반직 계 “627”을 “62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20”을 “621”로 한다.

별표 2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0 제1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2025년 12월 28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31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9]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44조의3
관련)

1. 해양수산부

가. 평가대상 조직

조 직	정 원	평가기간
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1명(4급 1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 원	평가기간
어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 업무	2명(5급 1명, 7급 1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2.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 원	평가기간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 업무	31명(6급 31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해양정책실) ① ~ ⑥ (생략)	제7조(해양정책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해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u>해양수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u>	1. <u>해양수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u>
2. ~ 14. (생략)	2. ~ 14. (현행과 같음)
⑧ ~ ⑪ (생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⑫ 해양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u><신 설></u>	17. <u>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련 업무</u>
⑬ (생략)	⑬ (현행과 같음)
⑭ 해양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u>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및 관련 제도의 운영</u>	16. <u>해양폐기물관리업(폐기물해양배출업 제외)</u> ----- --
⑮ 해양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u>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련</u>	<u><삭 제></u>

업무

12. ~ 16. (생 략)

⑩ ~ ⑭ (생 략)

제15조(국립해양조사원) ①·②
(생 략)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7. 해양조사협회의 지도·감독

8. ~ 14. (생 략)

④ ~ ⑨ (생 략)

제44조의3(평가대상 조직) 해양수
산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9와 같
다.

제46조(한시정원) ① ~ ③ 삭 제
④ ~ ⑭ (생 략)

⑮ 삭 제

⑯ 해양수산 분야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
년 11월 20일까지 별표 31에 따
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
다.

12. ~ 16. (현행과 같음)

⑩ ~ ⑭ (현행과 같음)

제15조(국립해양조사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6. (현행과 같음)

7. 한국해양조사협회-----

8. ~ 14.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44조의3(평가대상 조직) 해양수
산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 조직 및
정원-----
--.

제46조(한시정원)

④ ~ ⑭ (현행과 같음)

<삭 제>

⑰ <u>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1월 20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둔다.</u>	<u><삭 제></u>
⑱ <u>선박 평형수 조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1월 20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해양수산청에 둔다.</u>	<u><삭 제></u>
⑲ <u>수산물 방사능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1월 20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물과학원에 둔다.</u>	<u><삭 제></u>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제21조 관련)

명칭	관할구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 및 양산시와 창원시 중 부산항에 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다만, 제 22조제8항제25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 김포시·부천시·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동두천시·포천시·양주시·가평군·연천군·시흥시 및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라남도 중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구례군·곡성군 및 장흥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 및 양산시와 창원시 중 부산항은 제외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광역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원특별자치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장항항에 한정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구례군·곡성군 및 장흥군은 제외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김포시·부천시·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동두천시·포천시·양주시·가평군·연천군·시흥시 및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은 제외한

	다), 충청남도(평택·당진항에 한정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장항항 및 평택·당진항은 제외한다). 다만, 제22조제8항제25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601</u>		<u>603</u>	+2	
	.		.		.		
	.		.		.		
일반직 계			<u>597</u>		<u>599</u>	+2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 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u>56</u>		<u>57</u>	+1	
	.		.		.		
	.		.		.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 ·	 <u>196</u> · ·	 <u>197</u> · ·	 +1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7]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	•
			607		609	+2	
일	반	직	•	•	•	•	•
계			603		605	+2	
		•	•	•	•	•	•
		•	•	•	•	•	•
서	기	관	•	•	•	•	•
•	과	학	•	•	•	•	•
•	기	술	•	•	•	•	•
•	서	기	•	•	•	•	•
•	관	•	•	•	•	•	•
•	행	정	•	•	•	•	•
•	사	무	•	•	•	•	•
•	관	•	•	•	•	•	•
•	해	양	•	•	•	•	•
•	수	산	•	•	•	•	•
•	사	무	•	•	•	•	•
•	관	•	•	•	•	•	•
•	시	설	•	•	•	•	•
•	사	무	•	•	•	•	•
•	관	•	•	•	•	•	•
•	공	업	•	•	•	•	•
•	사	무	•	•	•	•	•
•	관	•	•	•	•	•	•
•	전	산	•	•	•	•	•
•	사	무	•	•	•	•	•
•	관	•	•	•	•	•	•
•	방	송	•	•	•	•	•
•	통	신	•	•	•	•	•
•	사	무	•	•	•	•	•
•	관	•	•	•	•	•	•
•	또	는	•	•	•	•	•
•	환	경	•	•	•	•	•
•	사	무	•	•	•	•	•
•	관	•	•	•	•	•	•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 ·	<u>207</u> · ·	<u>208</u> · ·	+1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321</u>	<u>324</u>	+3
일반직 계	<u>321</u>	<u>324</u>	+3
·	·	·	
·	·	·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 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 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u>84</u>	<u>87</u>	+3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8의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321</u>	<u>324</u>	+3
일반직 계	<u>321</u>	<u>324</u>	+3
·	·	·	
·	·	·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			
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	<u>83</u>	<u>86</u>	+3
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4]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285</u>	<u>1,287</u>	+2
일반직 계	<u>1,285</u>	<u>1,287</u>	+2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 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 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 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 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u>343</u>	<u>346</u>	+3
·	·	·	
·	·	·	
선박기관운영주사보	<u>1</u>	<u>0</u>	-1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5]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289	1,291	+2
일반직 계	1,289	1,291	+2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해양 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환경 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주사 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58	361	+3
선박기관운영주사보	1	0	-1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7]

국립수산물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9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627</u>	• <u>628</u>	+1
일반직 계	<u>627</u>	<u>628</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20</u>	<u>621</u>	+1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0]

해양수산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2 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u>1. 부산항 북항통합 개발추진 단(존속기 한: 2025 년 12월 3 1일)</u>	1. 부산항 북항통합 개발추진 단(존속 기한: 202 7년 12월 31일)	
·	·	·	
·	·	·	
2.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u>2. 어촌어 항재생사 업기획단 (존속기 한: 2025 년 12월 2 8일)</u>	2. 어촌어 항재생사 업기획단 (존속기 한: 2027 년 12월 3 1일)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6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13.	13. 제46 조제16항 관련 한시 정원(존속 기한: 202 5년 11월 20일)	<삭 제>	
총계	2	<삭 제>	-2
일반직 계	2	<삭 제>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 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 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	<삭 제>	-1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삭 제>	-1

<u>14. 제46조제17항 관련 한시정원</u> (존속기한: 2025년 11월 20일)	<u>14. 제46</u>		
	<u>조제17항</u>		
	<u>관련 한시</u>		
	<u>정원(존속</u>	<u><삭 제></u>	
	<u>기한: 202</u>		
	<u>5년 11월</u>		
	<u>20일)</u>		
총계	3	<u><삭 제></u>	<u>-3</u>
일반직 계	3	<u><삭 제></u>	<u>-3</u>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 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3	<u><삭 제></u>	<u>-3</u>
<u>15. 제46조제18항 관련 한시정원</u> (존속기한: 2025년 11월 20일)	<u>15. 제46</u>		
	<u>조제18항</u>		
	<u>관련 한시</u>		
	<u>정원(존속</u>	<u><삭 제></u>	
	<u>기한: 202</u>		
	<u>5년 11월</u>		
	<u>20일)</u>		
총계	2	<u><삭 제></u>	<u>-2</u>
일반직 계	2	<u><삭 제></u>	<u>-2</u>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해양 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환경 주사보 · 운전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2	<삭 제>	<u>-2</u>
<u>16. 제46조제19항 관련 한시정원</u> (<u>존속기한: 2025년 11월 20일</u>)	<u>16. 제46</u> <u>조제19항</u> <u>관련 한시</u> <u>정원(존속</u> <u>기한: 202</u> <u>5년 11월</u> <u>20일)</u>	<삭 제>	
총계	1	<삭 제>	<u>-1</u>
일반직 계	1	<삭 제>	<u>-1</u>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	<삭 제>	<u>-1</u>
.	.	.	